

2008. 10.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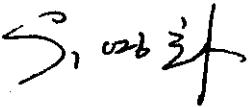
제 목 :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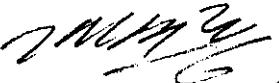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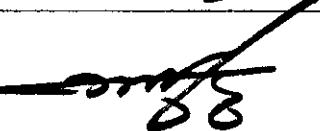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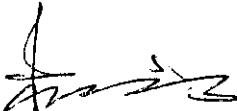
붙임 1. 의안발의 서명서 1부.

2.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유영화 의원 (서명또는 날인)

외 6 인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劉永和	S,永和	
김명섭		
최종암		
김병룡		
김봉수		
최기운		
신병삼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06
------	------

발의연월일 : 2008. 10. 14.
발의자 : 유영화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 제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복지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의 기본방침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범위를 정함(안 제5조, 제7조)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강화,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 여성농어업인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1조)
- 귀농, 이주 여성농어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개발 하도록 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7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수산업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한부모가족 지원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별첨 1.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 지위향상

-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 공급 함으로써 농어업 ·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 한다.

제5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 농어업 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마련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8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 · 현장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 교양 · 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 · 지원
- ② 시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 · 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 · 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리증진 · 모성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 · 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 · 지위향상 · 모성보호 · 보육여건 개선 ·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리보호 · 지위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업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어업, 농촌·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및 어업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 지역에서의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2조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7호]

제2조 (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제4조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수
2. 영유아 및 아동의 수
3. 보육 및 교육·문화시설의 수

제5조 (운영비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운영자의 자격 및 경력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문화시설의 확보 상황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실적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비의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을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